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6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 의원)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현행 「민법」과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친권 상실·정지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위탁가정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

나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소극적이며,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위탁아동 보호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어, 금융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아동의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동의 보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음.

첫째, 가정위탁보호자의 권한 행사 범위와 관련된 것임. 개정안에서는 가정위탁보호자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하여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입법례로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과 개정안의 역할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보다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법원이 임시후견인 지정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처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임시후견인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특정한 것은 임시후견인 제도 자체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유사 제도인 만큼 금번 개정안 심사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의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계좌 ‘해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계좌 해지 문제는 친권자와 재산 분쟁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음.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과 관련, 개통 이후 요금제 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금융계좌 개설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2조의2제1항)고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동의도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 외, 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그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0조의2제1항 중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의 대상인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것임.

개정안은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친권자 및 후견인과 같이 '법정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친권자가 없으면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아동 외에 친권자가 있으나 장기부재, 연락두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후견인 선임 청구 이후 실제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대리권의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기관의 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해 아동의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권한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인 만큼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법정대리권의 행사 기간으로 2년은 지나치게 긴 것은 아닌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겠음.

아울러, 후견인 선임 없이 법정대리권을 법률에서 직접 부여함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법원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셋째, 지자체장의 법정대리권 남용 점검과 관련된 부분임.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함께 점검 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